

2026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

전라남도과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는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모델 발굴 및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「2026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」 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6. 3. 9.

전라남도지사,
국립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장(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장)

1 지원대상 및 규모

- 사업명 : 2026년 농업과 기업 간 연계강화
- 사업기간 : 선정일로부터 2026. 12월까지
- 지원규모 : 기한 내 접수된 건으로 사업비 한도 내 선정(약 25개소)
 - 사업비 : 보조 604,210천원 ※자부담 별도(20%)
- 지원대상 및 주요내용
 - ①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(도내 소재 생산자단체)
 - * 식품·외식업체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가공용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대상 교육·컨설팅, 품질관리 및 영농환경 개선, 장비·시설 임차 등 필요 경비 지원
 - ②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(도내 소재 중소식품기업)
 - * 지역의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를 하는 중소식품기업 대상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작물 재배 및 품질 관리, 거래대금 관련 금융, 제품 홍보, 시설·장비 이용, 신제품 개발 등 지원

2 참가자격

- (생산지원) 생산자 단체* 또는 지역농협 등과 연계된 단체
 - 공고일 현재 전남에 소재, 생산하며 조합·법인·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)을 소유한 단체
 - * 5인 이상 등록된 농업회사법인, 영농조합법인, 농업협동조합, 5인 이상 작목반
 - * 생산자단체 계약대상 식품기업은 지역과 무관(타시도 소재업체 가능)
- (이용지원) 생산자단체 등과 거래계약 체결된 도내 소재 식품·외식기업
 -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도내인 기업
 - 식품·외식기업*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
 - * (식품업체의 범위)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(식품제조·가공업), 제3호(식품첨가물제조업), 제5호나목4)(식품소분·판매업 중 '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')
 - * (외식업체의 범위)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(식품접객업),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부로 확인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(본사)

3 신청기간 및 방법

- 신청기간 : 2026. 3. 9.(월) ~ 3. 30.(월)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
- 신청방법 : 전자우편(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jn6center@naver.com)
 - ※ 사업수행기관 :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(061-750-5294)
- 제출서류 : 신청서와 신청서에 명시한 구비서류
 - ① 생산지원
 -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계약재배 참여 농가 명단, 사업신청 체크리스트, 협약서, 계약재배 표준계약서(양식 통일 필수), 확약서 (붙임1)
 - 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),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
 - 24~25년 재무제표(25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), 4대보험 가입자명부(25년말기준)
 - 법인(단체)명의 통장 사본 및 통장 잔액증명서(신청 자부담금 이상 잔액 확인용)

- (식품 외식기업 확인서류) 영업신고증, 사업지등록증(식품 제조 혹은 음식업 필수)

② 이용지원

-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계약재배 참여 농가 명단, 사업신청 체크리스트, 협약서, 계약재배 표준계약서(양식 통일 필수), 확약서 (붙임2)
- 사업지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영업신고증, 중소기업(소상공인)확인서, 기맹본부확인서류(프랜차이즈 기맹본부만 해당)
- 24~25년 재무제표(25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), 4대보험 가입자명부(25년말기준)
- 법인(단체)명의 통장 사본 및 통장 잔액증명서(신청 자부담금 이상 잔액 확인용)
- (생산자단체 확인서류) 사업지등록증(고유번호증)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
○ 선정통보 : 선정 생산자단체(식품기업) 개별 직접 통보

4 지원절차

절차	주요내용	진행일정
사업공고	- 전남농촌융복합산업 홈페이지(www.전남6차산업.com)	'26.3.9.(월) ~ 3.30.(월)
↓		
신청서 접수	온라인 접수(전자우편: jn6center@naver.com)	'26.3.9.(월) ~ 3.30.(월)
↓		
선정평가	지원기관 : 외부 전문가를 통한 서면평가 ※ 1회차 지원 생산자단체 및 식품기업은 현장점검	~ '26. 4. 20.(월)
↓		
선정평가 결과통보	지원기관 : 선정평가 2주일 이내 결과 통보	~ '26. 5. 4.(월)
↓		
사전교육	지원기관 : 선정기업은 전남6차센터 방문 및 교육	~ '26. 5. 18.(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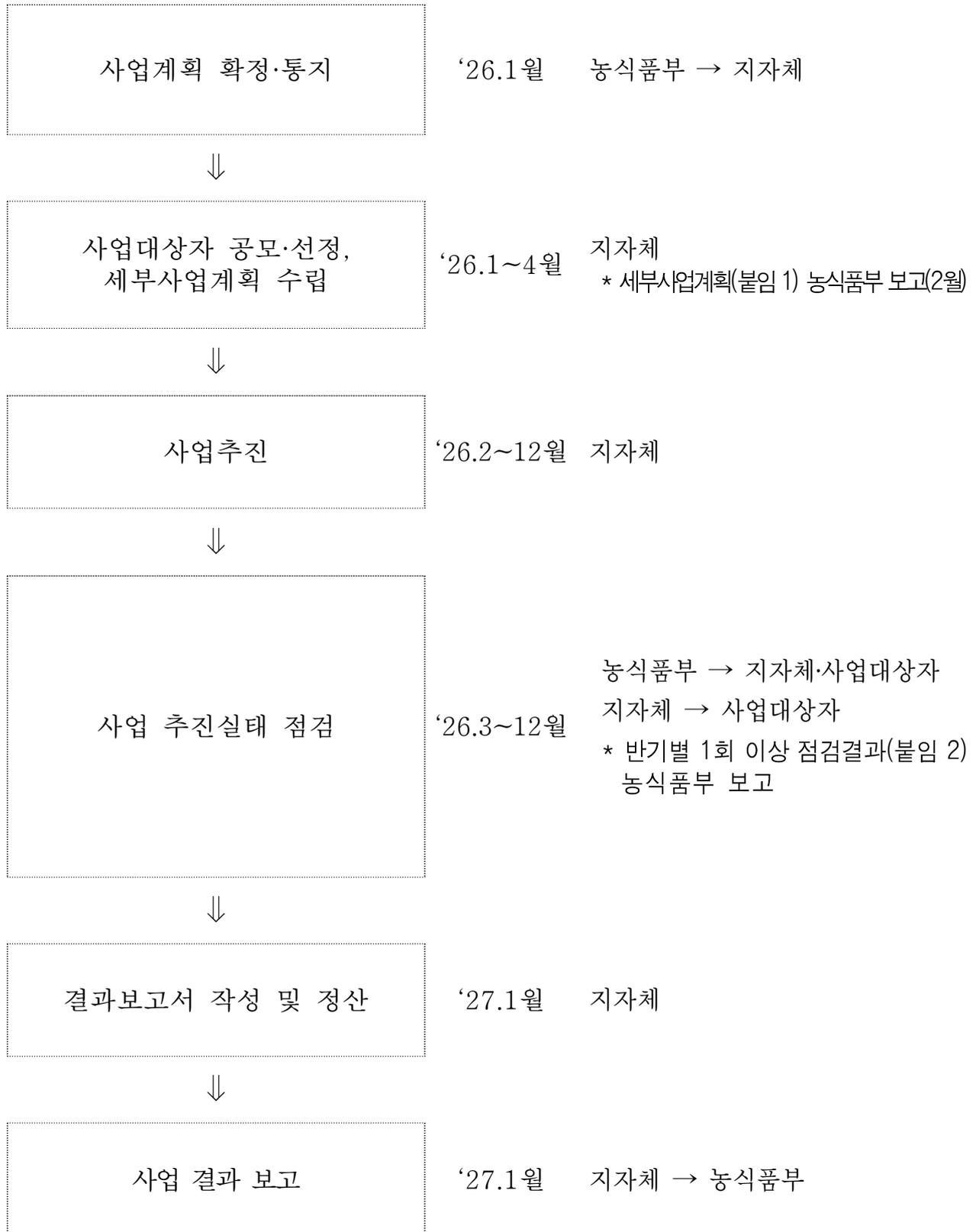
- * 1) 상기일정은 지원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- 2)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, 신청기업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

5 기타사항

- 선정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
-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.
-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며,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.
-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.
- 제출(구비)서류가 미비하거나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.
- 신청자의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최종 선정 후 제외될 수 있음.
- 지원대상 요건, 범위, 한도 등 세부내용은 ‘세부사업 설명자료’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,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.
- 본 사업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(e나라도움)을 통해 사업비가 교부, 집행, 정산되므로 e나라도움 운영이 불가능할 시 사업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.
- 기타 내용은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(☎061-750-529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아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사업신청 바랍니다

□ 사업 추진방식



1

가공용 농산물 생산지원(생산자단체)

□ (신청대상) 식품·외식업체와 계약재배하는 생산자단체(5농가 이상)

< 지원대상 요건 >

- ① **대상:** 5농가 이상 생산자단체(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제출 필수)
* 사업 공고일이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지원
- ② **계약유형:** 생산자단체-식품·외식업체, 생산자단체*-제3자(지역농협 등)-식품·외식업체
* 사업 참여 농가의 경영자(법인인 경우 임직원), 직계존비속,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계약은 제외
 - (식품업체의 범위)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(식품제조·가공업), 제3호(식품첨가물제조업), 제5호나목4)(식품소분·판매업 중 '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)
 - (외식업체의 범위)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(식품접객업),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부로 확인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(본사)
- ③ **거래금액:** 지원액(국비·지방비의 합)의 3배 이상
(예시: 지원금이 2천만원일 경우 계약재배 거래금액은 6천만원 이상)
- ④ **지원제한:** 농협, 6차산업인증자 등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이 모두 가능한 사업자는 생산지원 또는 이용지원 중 1가지 유형으로만 지원 가능
- ⑤ **지원기간:** 지자체별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3회(3년) 한도 내 지원 가능
 - **추가지원:** ①상생협력 우수사례 농식품부장관상 수상업체 ②계약재배 활성화 업체(1회차 대비 3회차 기준 계약재배 거래량·거래액 중 한 가지 항목이 30% 이상 증가한 업체)의 경우 2회 추가 지원 가능
 - **최대지원 횟수:** 추가 지원 등을 모두 합하여 총 8회까지만 가능

□ (지원규모) 참여 농가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일부 자부담

- ① **예산:** 사업비 기준 국고 40%, 지방비 40%, 자부담 20%
- ② **지원한도** ※ 국비·지방비의 합
 - 5농가 이상 참여 생산자단체 20백만원 이내
 - 10농가 이상 참여 생산자단체 40백만원 이내

□ (지원범위)

- ① **교육 및 컨설팅**: 작물 재배 관련 매뉴얼 보급, 국내 선진지 견학 및 전문업체 컨설팅 등의 비용
- ② **품질관리**: 계약재배와 관련된 인증 수수료(GAP 등), 품질·안전성검사, 위탁관리, 종자·비료 등 생산요소 변경(차액), 시범포* 조성 등의 비용
 - * (요건) 시범포 식별 표지판 설치, 사업기간(1년) 내 농산물 생산이 가능한 경우
 - (지원범위) 시범포 조성에 필요한 토지 임차비 및 생산요소 구입비 지원(시범포 조성규모 대비 생산요소 구입비용의 적절성 증빙 필요)
- ③ **영농환경 개선**: 계약재배 관련 농자재 및 영농 부산물 등 영농 폐기물 처리, 재배지역 환경 정리, 농자재 보관수거함 제작 등 비용
- ④ **공동장비 및 시설 임차관리비**: 계약재배 관련 농산물 및 농자재 보관저장을 위한 창고·사일로 등의 공동 시설, 파종경작방제수확 운송용 공동장비(운송비 포함) 등을 임차관리(정비 등)하는 비용
 - * (임차비 예시) 저온/냉동 저장고, 물류기기(팔레트, P박스), 운송차량 임차(생산자단체→식품기업, 개별생산자→생산자단체), 공동수확장비 등
 - 단, 자산성 장비를 보조금으로 장기 임차 후, 최종 구매하는 건은 지원 불가
- ⑤ **기타**: 식품업체 연계 관련 협의회, 간담회 등의 소요 비용

□ (선정절차) 지자체별 기준을 설정하고 공모를 통해 선정

- (절차) 세부사업계획 수립·제출(단체) → 지원 자격 충족 여부 심사 후 선정(지자체) → 최종 대상자 확정 및 통보(농식품부)
- (기준) ①연계의 효과성(30%), ②연계의 지속성(30%), ③사업계획의 적절성(20%), ④향후 파급효과(20%) 범위 내 지자체별 기준 설정

< 선정기준 고려사항 >

- ① 연계의 효과성 : 농가 규모 및 기대되는 금전적·비금전적 효과를 평가
 - ② 연계의 지속성 : 연계가 지속적으로 이행 가능한지를 평가
 - ③ 계획의 적절성 : 구체적 일정과 내용으로 추진 가능한지를 평가
 - ④ 파급효과 : 지역 사회로의 파급이 용이한지, 벤치마킹할 수 있는지를 평가
- ※ 최종 선정 이전에 조직화 정도, 재배지역 등 현장을 반드시 확인

<참고> 예산 집행 기준

※ 정산 시 반드시 지출내역별 관련 증빙 확인(증빙 미비 시 해당 항목 정산 제외)

항목	내역	지급기준	비고
교육 및 컨설팅	강사 컨설팅비	실비 (강사비는 자체 정산 기준 적용)	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·컨설팅비
	매뉴얼개발 및 보급비	실비	실용적 재배기술·품질관리 매뉴얼 보급
	선진지 견학비	실비	우수사례 견학 * 국내에 한함
농산물 품질관리	인증비, 검사비 등	실비	농산물 품질 제고
	생산요소 변경	실비	생산요소 변경 또는 신규 적용에 따른 발생 차액 * 정산 시 비교견적 제출
	시범포 조성	실비	품목(품종) 테스트
	위탁 수행비	실비	재배·병해충 관리 위탁
영농환경 개선	영농 폐기물 처리비 등	실비	위생·안전 제고를 위한 영농환경 개선
공동시설·장비	임차관리비	실비	농산물 생산·수확·보관·운송 등
기타	행사·홍보비	실비	연계 강화를 위한 행사·홍보 등
추가 증빙	계약재배 이행 여부 확인	-	납품 및 대금 지급 완료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(붙임6, 필수 제출) * 사업 정산보고 시 붙임6 양식과 함께, 거래송장표, 전자세금계산서, 통장거래내역, 사진 등 제출

2

가공용 농산물 이용지원(중소식품·외식업체)

- (신청 대상) 농가나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를 통해 원료 농산물을 조달하는 중소 식품·외식업체

< 지원대상 요건 >

- ① **대상:** 식품·외식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 - * 사업 공고일이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지원
 - (식품업체의 범위)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(식품제조·가공업), 제3호(식품첨가물제조업), 제5호나목4(식품소분·판매업 중 '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')
 - (외식업체의 범위)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(식품접객업),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부로 확인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(본사)
- ② **계약유형:** 농가·생산자단체-식품·외식업체, 농가·생산자단체-제3자(지역농협 등)-식품·외식업체
 - * 지원 대상 기업의 임직원, 직계존비속,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경영체는 제외. 다만, 그 비율이 50% 미만인 생산자단체와의 계약은 지원 가능
 - * 농가와 계약재배하는 경우에는 최소 5농가 이상
- ③ **거래금액:** 지원액(국비·지방비의 합)의 3배 이상
(예시: 지원금이 2천만원일 경우 계약재배 거래금액은 6천만원 이상)
- ④ **지원제한:** 농협, 6차산업인증자 등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이 모두 가능한 사업자는 생산지원 또는 이용지원 중 1가지 유형으로만 지원 가능
- ⑤ **지원기간:** 지자체별 자체평가 결과에 따라 3회(3년) 한도 내 지원 가능
 - **추가지원:** ①상생협력 우수사례 농식품부장관상 수상업체 ②계약재배 활성화 업체(1회차 대비 3회차 기준 계약재배 거래량·거래액 중 한 가지 항목이 30% 이상 증가한 업체)의 경우 2회 추가 지원 가능
 - **최대지원 횟수:** 추가 지원 등을 모두 합하여 총 8회까지만 가능

- (지원 규모) 실비 지원

① **예산부담:** 사업비 기준 국비 40%, 지방비 40%, 자부담 20%

② **지원한도(국비·지방비 합):** 개소당 최대 20백만원

- 단, 농촌융복합사업 인증사업자는 개소당 최대 40백만원까지, 신제품개발 시에는 개소당 최대 30백만원까지 지원 가능

□ (지원범위)

※ 가공시설 구입 및 상시 인건비 등 사업 취지와 무관한 비용은 지원 배제

- ① **작물 재배 및 품질 관리** : 계약 작물의 정상적 재배 이행 확인과 품질·안전 관리를 위한 인력 고용, 업무 위탁, 시험·분석, 검수 등의 비용

* 인력 고용 및 업무 위탁 비용 : 1천만원 한도 내 지원(국비·지방비의 합 기준), 다만, 업무 담당자가 대표자인 경우에는 불인정

→ 해당 인력 및 위탁기관의 재배 품질관리 전문성 입증할 수 있는 이력서나 기관 설명서, 동 사업의 계약재배 물량 관리 관련 업무 범위·양·내용 기록 증빙 필요

- ② **교육 및 컨설팅** : 식품·외식기업의 계약재배 관리 실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, 컨설팅 등의 비용

- ③ **계약재배 거래대금 관련 금융** : 계약금 지급에 따른 이자(계약금 1억원 한도로, 계약금 지급 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적용. 계약금 지급 시점~납품 시점까지 지원), 구매이행 보증보험 가입 비용*

* 단, 농식품부 '국내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지원사업(aT 수행, 참고 1)'을 통해 지원받는 경우에는 동 사업으로 정산 불가

- ④ **관측·홍보**: 계약재배 등 농업과의 상생협력 활동과 관련된 기업 홍보, 지역 농산물(광역지자체) 이용 강조 제품 홍보(포장재 동판 제작, 관측행사 등)

- ⑤ **시설 및 장비 임차관리비**: 계약재배 농산물의 수확 후 운송보관·전처리 단계에서 필요한 공동시설이나 장비(운송비 포함)를 임차관리(정비 등)하는 비용

* 필요 시 시설·장비를 농가 측에 설치 가능

* (임차비 예시) 저온/냉동 저장고 임차, 공동 운송용 팔레트, 운반용 지게차, 운송 장비 임차(농가→식품기업), 등

- 단, 자산성 장비를 보조금으로 장기 임차 후, 최종 구매하는 건은 지원 불가

⑥ **신제품 개발**: 해당 계약재배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을 위한 시험·검사인증 등의 비용

* 신제품 개발 항목 선택 시 개소당 최대 10백만원 추가 지원 가능(국비·지방비의 합 기준, 농촌융복합사업 인증사업자는 적용 제외)

* 해당 차수(연도) 지원 종료 시까지 품목제조보고를 완료하여야 함(완료하지 못한 경우 사업비 정산 불가 또는 해당 지원금액 환수)

* 신제품 개발 일정을 고려하여 인정기한은 사업지원연도 내(1~12월)

* **신제품 생산 비용 지출 불가**

⑦ **기타** : 협의회, 간담회 등 농가와의 연계를 위해 필요한 비용

□ **(선정절차)** 지자체별 기준을 설정하고 공모를 통해 선정

○ (절차) 세부사업계획 수립·제출(단체) → 지원 자격 충족 여부 심사 후 선정(지자체) → 최종 대상자 확정 및 통보(농식품부)

○ (기준) ①연계의 효과성(30%), ②연계의 지속성(30%), ③사업계획의 적절성(20%), ④향후 파급효과(20%) 범위 내 지자체별 기준 설정

< 선정기준 고려사항 >

① 연계의 효과성 : 농가 규모 및 기대되는 금전적·비금전적 효과를 평가

② 연계의 지속성 : 연계가 지속적으로 이행 가능한지를 평가

③ 계획의 적절성 : 구체적 일정과 내용으로 추진 가능한지를 평가

④ 파급효과 : 지역 사회로의 파급이 용이한지, 벤치마킹할 수 있는지를 평가

※ 최종 선정 이전에 조직화 정도, 재배지역 등 현장을 반드시 확인

<참고> 예산 집행 기준

※ 정산 시 반드시 지출내역별 관련 증빙 확인(증빙 미비 시 해당 항목 정산 제외)

항목	내역	지급기준	비고
작물 재배 및 품질관리	인건비, 업무위탁비, 시험분석비 등	실비	계약재배 이행상황 점검, 품질안전·관리 * 인력 고용 및 업무 위탁 비용 : 1천만원 한도 내 지원(업무 담당자가 대표자인 경우 불인정), 해당 인력 및 위탁기관의 '재배 품질 관리' 관련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이력서나 기관 설명서 및 동 사업으로 지원하는 계약재배 물량 관리 관련 업무 범위·양·내용 기록 증빙 필요
교육 및 컨설팅	강사비, 교육참가비, 자문료 등	실비 (강사비는 지자체 정산 기준 적용)	기업의 계약재배 관리 실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·컨설팅 등
계약재배 거래대금 관련 금융	이자, 보험료	실비	계약재배 계약금 지급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*, 구매이행 보증보험료** * 계약금 1억원 한도, 계약금 지급 시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적용. 계약금 지급 시점~납품 시점까지 지원 / 계약서에 계약금 명시, 지급내역 등 증빙 ** 농식품부 타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(참고1)(정산 시 해당 항목이 포함된 경우에는 타 사업과 중복 지원 여부 확인 요청(지자체→농식품부))
관측·홍보	관측비 홍보비	실비	계약재배 등 농업과의 상생·협력 활동을 강조하는 취지의 기업 홍보, 지역(광역 지자체) 농산물이용을 강조하는 내용의 제품 홍보* * 포장재 제작의 경우에는 동판제작만 정산 가능
시설·장비	임차·관리비	실비	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료농산물 규격 등 충족을 위해 계약재배 농산물의 수확 후 운송·보관·전처리 단계에서 필요한 시설·장비 * 필요 시 시설·장비를 농가 측에 설치 가능
신제품 개발	시험분석비, 인증수수료 개발 위탁비	실비	해당 계약재배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 * 신제품 개발 목적으로 최대 10백만원 추가 지원 가능(국비·지방비의 합) * 해당연도 지원 종료시까지 품목제조보고 완료 필수
기타	행사비	실비	연계 강화를 위한 행사
추가 증빙	계약재배 이행 여부 확인	-	납품 및 대금 지급 완료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(붙임6, 필수 제출) * 사업 정산보고 시 붙임6 양식과 함께, 거래송장표, 전자세금계산서, 통장거래내역, 사진 등 제출

1

생산지원(작목반)이 단체명만 변경하고 기존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사업 참여 횟수는 어떻게 적용되나요?

- 단체명만 변경하고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단체로 간주하므로, 기존 지원 횟수를 포함한 참여 횟수를 적용합니다.
 - 이는 최종 회차까지 지원이 완료되기 전 중도에 변경된 경우 뿐 아니라, 사업 지원 종료 이후 재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 - 다만, 구성원이 70% 이상 변경된 경우* 해당 단체명을 신규로 간주하여 1회차로 인정합니다.
 - * '(신규 농가 수/최종 농가 수)x100%'로 계산한 결과가 70% 이상이어야 하고, 이전 지원 이력이 있는 농가(타 단체 소속이었던 경우도 포함)가 이전과 동일한 품종을 재배하면서 참여하는 경우에는 신규농가로 보지 않음

2

계약재배 대상 기업 또는 생산자 단체가 변경된 경우 사업 참여 횟수는 어떻게 적용되나요?

- 동일한 농산물(품종)의 계약재배 대상 기업 또는 생산자 단체가 변경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신규 계약으로 간주하고 1회차로 인정합니다.
 - 다만, 품목, 생산자단체, 식품기업의 단순 추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
 - 단, 품목변경, 계약상대 변경 시에는 계약재배 활성화 실적이 있더라도 2회 추가 지원은 불가

3

계약재배 농산물의 종류가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사업 참여 횟수는 어떻게 적용되나요?

- 계약재배 농산물(품종 기준)이 다른 경우에는 신규 계약으로 간주하여 1회차로 인정합니다.
 - 농산물의 종류가 '추가'되는 경우에도 1회차로 인정하되, 다만 이전 종류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지원 횟수 한도를 초과하면 지원을 종료*합니다.
 - * 이후에는 이전 종류 농산물에 대한 거래금액을 제외하고 동 사업 지원액(거래금액의 1/3 미만)을 산출해야 함

- 단, 품목변경, 계약상대 변경 시에는 계약재배 활성화 실적이 있더라도 2회 추가 지원은 불가
- 또한, 같은 품종을 재배하는 경우라도 ‘스마트팜’ 도입 등 영농형태에 현저한 변화가 있는 경우도 신규 계약으로 간주하여 1회차로 인정합니다.

4 사업 최대 참여횟수는 얼마까지 인가요?

- 계약재배활성화, 계약재배 품목변경, 상대생산자단체 또는 식품기업 변경 등을 합하여 **최대 8회**까지만 지원가능
 - 예시) B생산자단체, 감자로 3회지원(계약재배 활성화시 2회추가 가능) →식품기업자격으로 품목변경(양과)하여 이용지원 신청(최대 3회지원, 계약재배 활성화 불인정) => **총 최대 5회+ 3회 = 8회** 까지만 지원가능
 - * 참고) 농협이나 6차산업인증자 등은 생산자단체이기도하면서 식품기업이기도 함
- 계약재배 품목변경, 상대 생산자단체 또는 식품·외식기업 변경시 신규 계약으로 간주하여 1회차로 인정(Q&A 2~3번 참고)
 - 단, 품목변경, 계약상대 변경 시에는 계약재배 활성화 실적이 있더라도 2회 추가 지원은 불가
- 사업의 기본 최대 참여횟수는 3회이나, 계약재배 활성화 생산자단체/식품·외식기업에 한해 2회 추가참여 가능
 - 계약재배 활성화란 1회차 대비 3회차의 계약재배 거래금액 또는 물량이 30%이상 증가한 경우를 말함

5 계약재배 실적은 그 해 사업연도로 한정되는건지?

- 품목별 농산물 특성과 가공용 원료 특성을 감안하여 해당 작물의 수확 시기 및 공급실적을 반영한 계약재배 실적이 필요합니다.
 - 사업 선정 당해 연도 12월말까지 사업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계약재배 농산물 공급이 다음 연도 1~3월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월사업으로 관리가

가능, 전년도 계약재배 계약서와 공급실적 제반서류를 확인하여 계약 재배 실적으로 인정 가능

6

신제품 개발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? 단순 포장단위 변경도 신제품 개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?

- 단순 포장단위 변경은 신제품 개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 - 내용물의 모양, 크기 등의 다양화, 원료의 구성 및 배합 변경 등 신제품 개발로 인정
- 신제품 개발 여부 확인은 해당 사업기간에 신고된 신규 품목제조보고로 확인
 - 단, 단순 용량변경, 배합변경 등으로 인한 변경 품목제조보고는 인정불가

7

농산물 작황 부진, 자연재해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거래금액이 사업 지원금액의 3배에 미치지 못할 경우, 사업 지원에서 배제되는지?

- 작황부진 및 자연재해의 경우 농산물 특성을 감안하여,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최종 거래금액이 사업 지원금액의 3배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 - 단 농작물재해보험금 수령내역(피해량, 피해면적)이나 사유서 등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고,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 검토를 통해 제재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8

시범포 조성 사업비 중 생산요소 구매 비율에는 제한이 없는지?

- 품목별로 생산여건에 따라 생산요소 투입이 다르기 때문에 생산요소 구입 비용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있으나, 시범포 품목과 면적에 맞게 적정한 생산요소를 구입하여야 합니다.

- 시범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경우,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사업비 환수 또는 지원배제 조치

9

계약재배지 증빙서류는 어떤 게 있나요?

- 계약재배지 증빙서류는 **농가명단에 등록된 생산자의 계약재배지가 명시된 서류**이면 가능합니다.
 - (예시) 계약재배지가 명시된 표준계약서,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토지대장, 경작사실확인서, 자조금납부증명서, 임대차계약서 등
- 2026년부터 도입된 표준계약서 사용시, 계약서 제 2조에 계약재배지 및 면적을 명시하는 경우 계약재배지 증빙서류 제출 면제혜택 부여
 - 만약 계약재배지 및 생산자가 다수일 경우 [별첨1] 재배지 및 생산자목록을 작성해야만 계약재배지 증빙서류 면제 혜택 부여
 - 표준계약서 다운로드 : aT 원료농산물 계약재배 정보서비스(<https://cf.kafb2b.or.kr/>)
→ 고객마당 → 자료실 → 가공용 농산물 계약재배 표준계약서

10

임차비 사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?

- 임차는 **계약재배 농산물의 수확 후 운송보관전처리 단계에서 필요한 공동시설이나 장비만** 가능
- 공동시설 이더라도 자산성항목의 임차후 우회구매는 원칙적으로 불가
 - 사업 심사시, 자산성 항목일 경우 구매견적서 제출하여 임차의 적정성을 따진 후 사업 수행가능
 - ex) 공동시설장비이지만, 맞춤제작으로 설치 후 타 사용자에게 재임대가 불가능한 장비불가 (ex) 계근대, 식품기업 맞춤 시설장비 등)
- 저온/냉동창고 임차시 계약재배 물량 대비 적절한 평수로 임차
 - 계약재배 물량에 비해 현저히 넓은 평수를 임차할 경우 지원불가